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'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·해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,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준일과 같은 날”을 “1월 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2022년 12월 1일”을 각각 “2023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”을 “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”로, “기준일과 같은 날”을 “1월 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4조(규제의 재검토)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<u>기준일과 같은 날</u>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44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.			
1. 제1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: <u>2022년 12월 1일</u>	1. --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</u>			
2.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: <u>2022년 12월 1일</u>	2. ----- ----- --- <u>2023년 1월 1일</u>			
3.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: <u>2022년 12월 1일</u>	3.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</u>			
4.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: <u>2022년 12월 1일</u>	4.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</u>			
5. 제39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: <u>2022년 12월 1일</u>	5. --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</u>			

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소방청장은 <u>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: 2016년 6월 30일 2.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: 2016년 6월 30일	제4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----- -- 1월 1일 ----- ----- -----. <삭 제> <삭 제>